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수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5768
----------	-------

발의연월일 : 2025. 12. 30.

발 의 자 : 김승수 · 김은혜 · 서천호
한지아 · 박충권 · 김도읍
안상훈 · 엄태영 · 김정재
정점식 · 서범수 · 강명구
구자근 의원(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영화’를 극장 상영을 목적으로 제작된 것으로 한정하고 있어 OTT(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를 통해 공개되는 OTT 영화는 법률상 ‘온라인비디오물’로 분류되고 있으며, 비디오물의 상영등급에 대한 구체적인 분류기준은 영화의 상영등급에 대한 분류기준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OTT에서는 흡연·욕설 등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또는 언어가 등급분류에 포함되지 않아 청소년에게 노출되는 문제가 있고,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등급분류에 대한 의견수렴, 사례공유 등의 부족으로 등급분류를 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

이에 흡연·욕설 등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또는 언어의 사용에 관한 사항을 영화와 비디오물 등급분류 시 고려하도록 하고,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의견수렴 및 등급분류책임자의 사례 공유

등을 규정함으로써 등급분류가 적절하게 이루어져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제29조제7항제7호 및 제50조의4제1호의2 신설 등).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7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흡연·음주·욕설·비속어 등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또는 언어의 사용에 관한 사항

제50조의4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등급분류책임자는”을 “등급분류책임자는 자체적으로 등급분류를 한 사례를 공유하며”로 한다.

- 1의2. 제50조제5항에 따른 비디오물 등급분류 기준에 따라 자체적으로 분류한 등급분류의 적절성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견을 수렴할 것

제50조의8제1항제3호 중 “제50조의4제1호 및 제2호의”를 “제50조의4제1호, 제1호의2 및 제2호의”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온라인 교육시스템과”를 “자체 등급분류 사례 공유, 온라인 교육시스템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9조(상영등급분류) ① ~ ⑥ (생 략) ⑦ 제2항 각 호의 상영등급에 대한 구체적인 분류기준은 다 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 6. (생 략) <u><신 설></u>	제29조(상영등급분류)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 ----- ----- ----- -----. 1. ~ 6. (현행과 같음) 7. <u>흡연 · 음주 · 욕설 · 비속어</u> <u>등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u> <u>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또는</u> <u>언어의 사용에 관한 사항</u> ⑧ ~ ⑩ (현행과 같음)
제50조의4(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준수사항) 자체등급분류사업자 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 하여야 한다. 1. (생 략) <u><신 설></u>	제50조의4(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준수사항) ----- ----- -----. 1. (현행과 같음) 1의2. <u>제50조제5항에 따른 비디</u> <u>오물 등급분류 기준에 따라</u> <u>자체적으로 분류한 등급분류</u> <u>의 적절성에 대하여 문화체육</u> <u>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u> <u>라 의견을 수렴할 것</u> 2. (현행과 같음)
2. (생 략)	

3.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급분류책임자를 지정하고 해당 <u>등급분류책임자는</u> 영상물등급위원회가 실시하는 등급분류 업무에 필요한 교육을 받을 것 4. 5. (생략) 제50조의8(영상물등급위원회의 지원업무) ①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자체등급분류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을 할 수 있다. 1. 2. (생략) 3. <u>제50조의4제1호 및 제2호의</u> 준수 여부 확인을 위한 온라인 사후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4. 제50조의4제3호에 따른 등급분류책임자에 대한 <u>온라인 교육시스템과</u> 대면 교육체계 구축 및 운영 5. ~ 7. (생략) ② ~ ④ (생략)	3. ----- ----- -----<u>등급분류책임</u> <u>자는 자체적으로 등급분류를</u> <u>한 사례를 공유하며</u>----- ----- ----- 4. 5. (현행과 같음) 제50조의8(영상물등급위원회의 지원업무) ① ----- ----- ----- ----- -----. 1. 2. (현행과 같음) 3. <u>제50조의4제1호, 제1호의2</u> <u>및 제2호의</u>----- ----- ----- 4. ----- -----<u>자체 등</u> <u>급분류 사례 공유, 온라인 교</u> <u>육시스템과</u>----- ----- 5. ~ 7.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	--